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 번호	316
----------	-----

2023. 12. 14.
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10. / 김상수 의원 등 11명
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13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1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맨발 걷기를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 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-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)
-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선기)

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단순 산책이나 걷기 활동보다 더 편안하고 새로운 건강 활동을 경험할 수

있는 맨발 걷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,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. 1부.